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6 - 154호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 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6. 12. 16.

###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,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과 그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제3조(영업시간)

- ①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과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.
- ②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선내기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:00 ~ 22:00까지로 한다. 단,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시간을 적용한다.
- ③ 제2항 단서의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낚시

어선은 야간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1호에서 정한 어로·항해 금지해역에서의 어로·항해 금지시간(22:00~03:00) 준수
-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장비의 고장, 인명사고,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, 어업무선국과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(051-704-3895) 및 출입항신고소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
- 3. 제1호에 따른 어로·항해 금지시간의 야간 출입항 시에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
- 4. 제1호에 따른 어로·항해 금지시간 중 연안에서 3마일 이내 어로 및 조업 금지

#### 제4조(영업구역)

-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부산광역시 관할 수역으로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부산항 정박지내의 해역
  - 2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,「해사안전법」,「원자력안전법」, 「항만법」,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- ③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모든 도서 및 갯바위, 간출암에 낚시승객을 안내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그 외 지역 중 소유자나 관리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및 관리청이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낚시 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VHF(DSC)통신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- 1.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
  - 2.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

제5조(야영금지)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경우에 그 승객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야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낚시장소에 낚시 어선을 야영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낚시어선업자가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6조(기타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(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)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.
  - 2.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3.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구·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(수역·육역)를 관할하는 구청장·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4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및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.
  - 5. 낚시어선업자는 비상시 승객을 치료할 수 있는 밴드, 붕대, 소독액 (과산화수소, 포비돈, 에탄올 등), 상처치료 연고 등의 구급약품을 낚시어선에 비치하여야하며, 유효기간이 지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6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, 통신, 기관, 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  - 7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V-PASS(어선위치발신장치) 또는 VHF(DSC)

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. 단, 출입항신고기관(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)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- 8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에게 출항 전에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등 낚시어선 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야 한다.
- 9.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에게 본 고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, 선원 의 고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.
- 10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면허어장에 뗏목 등 잡종선(널빤지, 합성수지류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낚시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승객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  - 2.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·채취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 하여야 한다.
  - 3.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4.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- 가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  - 나.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 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   - 라.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  - 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·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    - 바.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동의를 미착용하는 행위
    - 사.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

- 아.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자. 폭발물, 인화물질 등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행위
- 5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6.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.
- 7.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- 제7조(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)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낚시어 선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 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.

#### 부 칙

- 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해운대구 고시 제 2006-52호(2006, 5, 3,)는 폐지한다.
- 3.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해운대구 고시 제 2012-162호(2012, 11, 21,)는 폐지한다.

#### [ ]

## <u>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</u>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- 1. 게시판의 제작기준
  - 가. 재질: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
  - 나. 색상
    - 1) 글씨: 검은색
  - 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: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 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- 2.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3.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하는 사항 게시문 예시

# 승선정원 명

####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승객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2)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포획금지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 야 합니다.
- 3)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 야 합니다.
- 4)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  - 가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나.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 하는 행위
 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 - 라.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0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  - 바.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동의를 미착용하는 행위
  - 사.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
  - 아.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
  - 자. 폭발물, 인화물질 등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행위
- 5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6)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합시다.
- 7)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.